

울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단110970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경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사실(이하 원고가 추진하는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 18.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7억 2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30. 피고에게 계약금 1억 4,0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이후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기본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4,04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허가용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원고 집행부와 협의나 승낙이 필수적이다. 피고는 2019. 3. 13.경 원고와의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나, 원고 조합의 집행부는 2019. 1.경 및 2019. 5.경 조합장이 변경되고 조합 내부에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등 그 과정에서 피고와 책임지고 협의나 승낙을 할 집행부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이 선출된 후 2019. 5. 1.경 협의용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조합장 D와 임원들을 만났으나 원고의 집행부는 피고와의 협의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비협조로 더 이상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갑 1, 4, 9, 12, 14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정들, 즉 ① 피고측은 2018. 12. 20. 당시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E를 포함하여 집행부 및 조합원들 일부가 참석한 회의에 함께 참석하여 기존 설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설계안을 제시하였고, 2019. 1. 12. 개최된 원고 조합의 정기총회에도 참석하여 기존 설계사인 주식회사 F에서 작성한 설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던 점, ② 피고는 그 후 2019. 1. 18. 원고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19. 2. 23.경 주식회사 F에게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작성한 각종 심의도서, 사업승인도서, 관계부서협의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피고에게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원고와의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도면 작성을 시작하였고, 2019. 3. 13.경 협의용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가 기존 설계도면에 대한 아파트의 방향, 동간 이격거리, 용적률 등을 수정하여 허가용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원고 조합 집행부와 협의와 그 승낙이 필수적이었던 점, 그런데 원고 조합은 2019. 1.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E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2019. 4. 13.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9. 5.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조합장을 D로 선출한 것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는 등 조합장이 단기간에 변경되는 등으로 그 동안 피고와 책임지고 협의할 집행부가 없었던 점, 원고측에서는 2019. 3.경 피고에게 기본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초순경 원고의 조합 집행부가 모두 사임한 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측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협의를 위하여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D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원고는 2019. 4. 18.경 피고에게 기본설계도면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1.경 원고와의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도면을 준비하여 새로이 선출된 원고 집행부와 모임을 가졌으나 원고측의 비협조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 조합의 집행부가 중도에 사임하고 단기간에 변경되는 등 원고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허가용 도면작성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9. 3.경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